

[채권보전] 채무회피 목적으로 재산처분 +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3) 채권자 원고가 피고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발생하였으

나 손해배상채권의 액수와 범위는 관련사건 소송을 통해 판결의 선고로 2015. 10. 6. 확정됨

(4) 피고 채무자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액수와 범위가 정해지기 전 2012.

2. 27. 위 손해배상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함.

(5) 원고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6) 항소심 판결: 채권자 패소 판결 - 사해행위 당시에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7) 대법원 판결: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첨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